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3.

외교통일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0월 28일, 권칠승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10월 2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2025년 2월 26일)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년 3월 6일)

상정 · 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2025년 3월 11일)

상정 · 소위 심사보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권칠승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협력의 기본정신을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의 기본원칙으로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을 존중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정신 중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향상’이라는 문구는 이들에게만 인권향상의 필요성이 한정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위험성이 있음.

또한 기본원칙 중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은 국제연합헌장 전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성평등’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나, 인권을 근간으로 개발협력을 진행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논의를 고려할 때, 인권 존중을 기본원칙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협력의 기본정신을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 등 인권취약계층’의 인권향상으로 확대하고, 기본원칙에 세계인권선언과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추가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본정신과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

항 및 제4조제1항제1호). 이 협정의 비준을 통하여 공해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海洋遺傳資源) 채집·관리에 대한 정보공유를 의무화하고,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활동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생태계 약화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곽 현 준)

현행법 제3조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으로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향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4조는 국제개발협력 실시의 기본원칙으로 ‘국제연합헌장의 기본 원칙 존중’을 제시하고 있음.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 따른 인권향상의 대상을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에서 ‘그 밖의 인권 취약계층’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 실시의 기본원칙에 ‘세계인권선언 및 우리 정부가 비준한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추가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인권을 보다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 <u>청소년</u> 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 ----- ----- <u>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u>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기본원칙) ① 국가, 지방자	제4조(기본원칙) ① -----

현행	개정안
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국제개발 협력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u>원칙</u> 존중 2. ~ 5. (생략) ② (생략)	----- ----- ----- ----- ----- -----. 1. -----<u>원칙</u>, <u>세계인권선언 및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주요 국제인권조약</u>-----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N의 개발전문기관인 UN개발계획(UNDP)에서 지속적으로 개발과 인권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등¹⁾ 인권이 개발협력의 중요한 의제로 설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기본원칙에서 인권을 강조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전반적으로 타당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안 제3조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인 인권향상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에서 ‘인권 취약계층’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방식은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에 국한하여 인권향상을 실현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인권에

1) UNDP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담론 내 인권주류화를 구축하였는데, 시작은 1998년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에 인권을 통합한 정책이었다. 2003년 빈곤감소 전략에 인권을 통합하기 위한 지침을, 2005년 프로그래밍 전 영역에서 인권을 주류화하기 위한 지침을 발간하였다.(성하은·김혜정, KOICA 인권기반 개발협력 프로그램 시행방안 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21, 16 (2), 3-29)

기반한 개발협력의 확대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으로 보임.

참고로, 동 규정은 제정 당시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에 국한되었으나, 2013년 장애인이 추가되어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으로 개정되었으며, 2018년 청소년이 추가되어 현행과 같게 되었음.

법률 제9938호	법률 제11889호	현행법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u>여성</u> 과 <u>아동의 인권향상</u>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u>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u> ,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u>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향상</u> ,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개정안 제4조는 세계인권선언 및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주요 국제인권조약²⁾의 존중을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원칙에 추가하려는 것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인류의 야만적인 범죄에 대한 성찰을 계기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진술한 문서로서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헌장의 취지를 반영하여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작성되었고,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음.³⁾

2) [참고자료 1]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주요 국제인권조약 현황

3) [참고자료 2] 세계인권선언 주요 내용

동 문서는 이후 60개 이상의 국제인권 관련 규범의 기초가 되고 있는데, 세계인권선언 및 정부가 비준한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존중을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제개발협력이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다만, 세계인권선언을 직접 명시하지 않으면서도 해당 선언 및 관련 조약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담아 기본원칙을 작성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⁴⁾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원칙으로 열거된 다른 호의 규정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외교부는 현행법 제4조에서의 기본원칙들은 기본적 가치·개념을 언급하고 있어 특정 조약이나 선언을 적시하는 것은 전반적 구성과 맞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며,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주권적 권리, 개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여국의 상황 및 가치를 감안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현행	개정안 (예시)
제4조(기본원칙)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u>1의2. 개발도상국의 인권 증진 및 보호</u>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1]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주요 국제인권조약 현황

연번	인권조약명	가입일/발표일
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ICESCR)(A규약)	1990.4.10./1990.7.10.
1-1	선택의정서	미가입
2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ICCPR)(B규약)	1990.4.10./1990.7.10.
2-1	제1선택의정서(개인진정)	1990.4.10./1990.7.10.
2-2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	미가입
3	인종차별철폐협약(CERD)	1978.12.5./1979.1.4.
4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1984.12.27./1985.1.26.
4-1	선택의정서	2006.10.18./2007.1.18.
5	고문방지협약(CAT)	1995.1.9./1995.2.8.
5-1	선택의정서	미가입
6	아동권리협약(CRC)	1991.11.20./1991.12.20.
6-1	제1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	2004.9.24./2004.10.24.
6-2	제2선택의정서(아동 매매·성매매·음란물)	2004.9.24./2004.10.24.
6-3	제3선택의정서(개인진정)	미가입
7	장애인권리협약(CRPD)	2008.12.11./2009.1.10.
7-1	선택의정서	2022.12.15./2023.1.14.
8	강제실종방지협약(CPED)	2023.1.4./2023.2.3.

자료: 외교부

[참고자료 2] 세계인권선언 주요 내용

세계인권선언 주요 내용

□ 전문

인권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이다.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의 지배에 의한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

□ 제1조-제2조: 인권에 대한 보편적 규정

존엄성과 권리의 평등, 천부적 자유

□ 제3조-제21조: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정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공정한 재판, 언론의 자유, 이전의 자유, 생활·명예·신용에 대한 권리, 노예·고문·자의적인 체포로부터의 자유, 국적권, 성인 남녀의 혼인권, 재산소유권, 사상·양심·종교·집회·결사의 권리, 참정권 등

□ 제22조-제27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정

사회보장 수혜,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 정당한 보수, 노조가입, 휴식과 여가, 모자보호, 교육, 자신의 존엄과 자유, 개인적인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

□ 제28조-제30조: 권리 및 자유실현의 전제 규정

본 선언 내 권리 및 자유 실현 관련 사회적 국제적인 질서에 대한 권리, 공동체에 대한 의무, 타인의 권리와 자유 존중 등을 명시

자료: 외교부 누리집

[참고자료 3] 국제연합헌장의 원칙

국제연합헌장

제1장 목적과 원칙

제2조

이 기구 및 그 회원국은 제1조에 명시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1.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2. 모든 회원국은 회원국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을 그들 모두에 보장하기 위하여, 이 헌장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3.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4.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든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5. 모든 회원국은 국제연합이 이 헌장에 따라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 있어서도 모든 원조를 다하며, 국제연합이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대상이 되는 어떠한 국가에 대하여도 원조를 삼간다.
6. 기구는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한,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확보한다.
7.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원칙은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아니한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소위원장 김 건)

-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